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시험에 헌법과목 추가

### I. 개요

1. 앞으로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또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 아닌 모든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합격점에 미달할 경우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따라서 5급 공채 1차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합격자 중에서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각 40문항 출제

(2) 또한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가점은 일정 점수(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3. 현재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인사혁신처 주관의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의 공직채용 기회가 넓어지고, 공직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

처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6월까지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 필기시험(PSAT)을 치를 예정이다.

- (2) 공직가치 검증 강화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확대는 연구직·지도직 채용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험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1)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현행)국가공무원 5급공채시험·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만 대체 → (개정)7급공채도 대체

- 현행과 같은 문법·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플(TOEFL)·토익(TOEIC)·텡스(TEPS)·지텔프(G-TELP)·플렉스(FLEX) 등 검정시험 점수 제출로 영어과목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 한편, 업무의 특수성 및 영어활용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은 다른 직렬 공무원과 달리 더 높은 기준점수가 적용된다.

※ 국가공무원 7급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2017년부터 시행)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7급공채 (외무영사직 외)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7급 공채 (외무영사직)	567점 이상	227점 이상	86점 이상	790점 이상	700점 이상	Level 2의 77점 이상	700점 이상

(2) 또한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등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과 성적취득 기준 시점도 연장된다.

-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영어·외국어 2년→3년, 한국사 3년→4년)되고, 취득성적 제출 시기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늘려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했다.
- 이에 따라 해당 성적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자체 유효기간(2년) 만료 예정인 영어·외국어 검정시험성적을 수험생이 유효기간 내에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사전등록시스템)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개설할 예정이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지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해당 시험의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 한다.

- 또한 사전등록은 매달 일정기간(10일 내외)동안 진행할 예정으로,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문을 확인해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유효한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 (3)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된다.
-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 이밖에 신설된 '정보보호'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 정보보호 직류는 사이버침해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공직 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문가 자문회의·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 규정되었다.

## II.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 5급 공채시험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시행 : 201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5급 공채시험 등에 '헌법' 미포함(07년~)</li> <li>• (개정) 5급 공채시험 등의 1차시험 과목에 '헌법'추가 - 60점 이상인 경우 Pass제로 운영</li> </ul>
② 경력경쟁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부여 (시행 : 공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에 대한 명시적 법령근거 부재</li> <li>• (개정) 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li> </ul>
③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도입 (시행 : 공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6급이하 경채는 대부분 각 부처에서 선발</li> <li>• (개정)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 선발절차 : 필기시험(PSAT) → 서류전형 → 면접시험</li> </ul>
④ 7급 공채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 (시행 : 201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7급 공채시험 '영어'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출제</li> <li>• (개정)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li> </ul>

⑤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b>&lt;유효기간 연장&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영어·외국어 2년, 한국사 3년의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li> <li>• (개정) 유효기간 1년씩 연장(영어·외국어 3년, 한국사 4년)</li> </ul>
⑥ 가산점제도 개편 (시행 : 2017. 1. 1)	<b>&lt;제출기준일&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원서접수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해 인정</li> <li>• (개정)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까지 인정범위 확대</li> </ul>
⑦ 기타 제도개선	<b>&lt;정보보호 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 등 반영&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필요에 따라 정보보호 직류 신설(角, 6)</li> <li>• (개정)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등 규정</li> </ul>
	<b>&lt;응시자 서류제출 규정 정비&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자격증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li> <li>• (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서류 제출</li> </ul>

### Ⅲ.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출제범위

과목(명)	주요내용
네트워크 보안	LAN/WAN, OSI 7 Layer, TCP/IP 등 네트워크 일반 네트워크 장비의 이해,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활용, 네트워크 기반 공격 기술, 네트워크 보안기술(방화벽/IDS/IPS 등 보안장비, IPSec 등 보안프로토콜, 무선랜 보안 등)
정보시스템 보안	운영체제 이론 및 일반, 운영체제 주요 구성 기술, 보안 운영체제, 클라이언트 보안, 리눅스 등 서버 보안, 서버 보안관리, FTP, MAIL, DNS 등 시스템 보안관리 등
정보보호 기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등 정보보호 일반 이론 암호화, 접근통제, PKI, 전자서명 등
정보보호 관리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위협관리, BCP/DRP, 물리적 보안,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제도, 정보보호 대책 구현 및 운영, 정보보호 관련 표준·지침,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자서명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 등